

2014년도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여성요양보호사 현황(2014.8월기준)

요양보호사

전체 274,906명 종사중이며
자격취득인원의 22.5% 차지

여성의 취업 상황

전체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여성요양보호사 258,091명 (93.8%)

기관 분류별 종사현황

입소시설 : 54,502명(19.8%)
재가기관 : 220,404명(80.2%)

연령별 종사 현황

전체 여성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40~60대가 254,175명(92.5%)



여성차별=남성중심적 사회

가정내 여성차별

가장 중심

아버지, 남편에 복종

음식, 집안청소는 여성

남성중심의 관혼상제

남성의 일
여성의 일 구분

직장내 여성차별

남성 중심

남성 상사에 복종

커피, 회사청소는 여성

남성중심의 회사관리

남성 주요업무
여성 부차업무

사회의 여성차별

- ◆ 여성의 특정 신체 일부를 상품화해 돈버는 사회
- ◆ 여성의 자기결정권 무시
- ◆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낮은 지위 정당화

여성차별로 인한 다른 성심리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성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남 성	여 성
성적 표현	친근함의 표시로	성적 수치심으로
성적 농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비상식적 언어표현으로
이성동료에 대하여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이성보다는 동료로
성폭력 발생시	분위기로 그럴수도	인격적 모독으로
성폭력 문제제기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
문제 제기하는 여성	시끄럽고 드센 여자	용감한 여성
가해자 처벌	지나친 처사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한 일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

장기요양 종사자들은

모두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예)

업무 및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서비스 제공 현장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사업장, 서비스 제공 현장 어디
서나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됨

3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또는

4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S대 병원 교수의 성희롱?

S대 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평소에 간호사에게
“빈약한 가슴이다. 성형외과 방에 갔다 와라.”,
“첫키스는 언제 했냐?”, “팬티는 매일 갈아입냐” ,
“엉덩이가 탕탱하다.” 는 등의 말을 하였고
같은 과의 T간호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을
앓기도 했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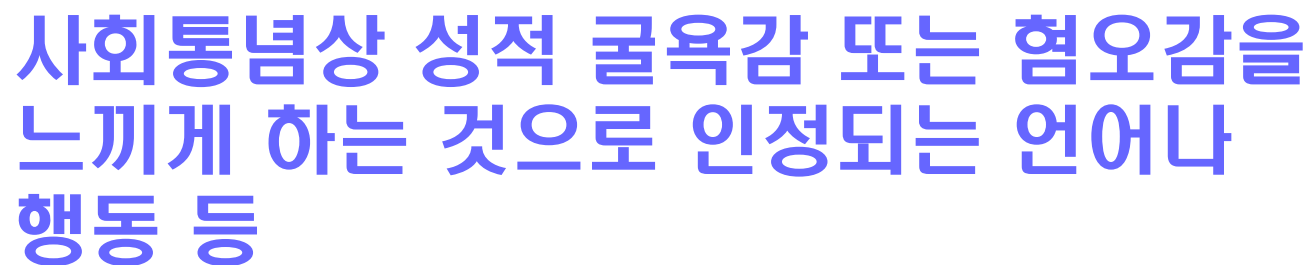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당함

2.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뒤에서 안으려고 하여 도망감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방지의무

성희롱
예방관련
법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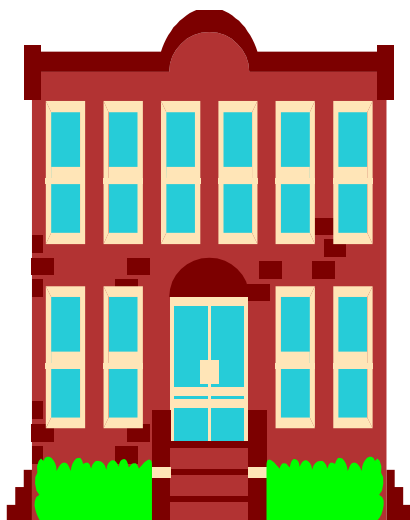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마련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등 조치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 25조**
❖ 성희롱 상담 직원 배치 등
❖ 자율적 해결 노력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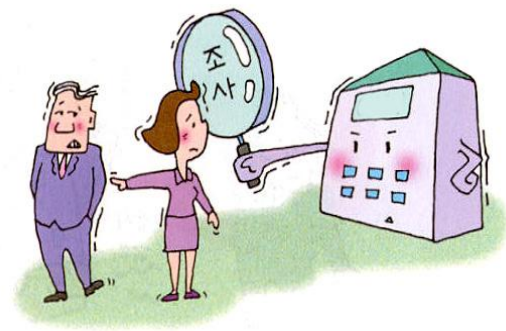
증거자료 수집(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기록) 기록 보관

고충상담원(시설장) 등에게 면담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



성희롱 등 발생시 적극적 대응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31
humanrights.go.kr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66
www.mogef.go.kr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0
www.moel.go.kr

민사소송

검찰-고소.고발

성희롱 없는 즐거운 일터,
차별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

